

#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5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2월 26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시설을 ‘종합사회복지관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함.
-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‘업무 범위’는 시설의 상황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.
- 끝으로 이 조례 조문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시설 ‘우선 배치’ 규정은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8조의2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의2의 제목 “(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)”을 “(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회복지시설”을 “종합사회복지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행한다”를 “수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회복지시설”을 “종합사회복지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사회복지시설”을 “종합사회복지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8조의2(<u>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</u>)</p> <p>① 시장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사회복지시설에</u>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<u>수행</u>한다.</p> <p>③ 시장은 <u>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</u>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의2(<u>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</u>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종합</u></p> <p><u>사회복지관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수</u></p> <p><u>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<u>종합사회</u></p> <p><u>복지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④ 시장은 사회복지  
시설에 정신건강전  
문요원이 배치될 수  
있도록 노력하여야  
하며, 사회복지시설  
에 배치된 정신건강  
전문요원의 처우개  
선을 위하여 노력하  
여야 한다.

④ ----- 종합사회  
복지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) ① 시장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8조의2(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) ①</u>  <u>시장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